부평 캐슬 & 더샵 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견본주택 운영 안내

■ 부평 캐슬 & 더샵 퍼스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견본주택(www.lottecastle.co.kr)으로 대체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 이후 서류접수는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되며, 견본주택은 계약체결 기간내 당첨자에 한해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당첨자 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인원은 계약자 1인으로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일정은 당첨자 발표 이후 개별 통보 및 예약 예정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되며, 청약 신청시 정확한 주소 확인 바랍니다.
 - 공급계약체결일에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불가,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 증명서 및 여권 확인 예정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최근 1개월 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열화상카메라, 비접촉체온계, 소독발판, 손소독제 등)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등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811-6767)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12.10.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공인인증서'에서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2.30(수)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으며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20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2019.11.01. 개정된 동법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2호, 3호, 3의2호, 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나목에 의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제3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부적격 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부적격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2순위로 청약가능)합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1,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청약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직장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1순위 자격제한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획득한 자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 한정),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 입주자 현황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조회가능하며,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20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각각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 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공공주택지구의 주택(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은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여부를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본 아파트의 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위 부동산 거래신고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과 마감재리스트는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 노부모부양·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10일간)	계약체결(10일간)
일정	2021.01.11.(월)	2021.01.12.(화) -해당지역	2021.01.13.(수) -기타지역	2021.01.14.(목)	2021.01.21(목)	2021.01.22.(금) ~ 2021.01.31.(일)	2021.02.01(월) ~ 2021.02.10.(수)
방법 및 시간	인터넷 청약 (08:00~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인증서 로그인후 조회 가능)	등기우편 접수	견본주택 방문 계약 10:00 ~ 16:00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당사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상동 402번지 우. 14598	당사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상동 402번지 ※ 당첨자1인 외 입장 불가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9.29.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13977호(2020.12.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청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623세대 중 일반분양 1,140세대

■ [특별공급 총 559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1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2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2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7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

공고상(청약시)주택형	59.9295	72.6394	84.9365A	84.8843	비고
약식표기	59	72	84A	84B	

■ 공급세대수 [단위 : ㎡, 세대]

구분(약식표기)	39	59	72	84A	84B	합계
총 세대수	84	890	302	238	109	1,623
일반		728	202	129	81	1,140
조합		158	97	106	28	389
임대	84					84
보류지		4	3	3		10

■ 입주시기 : 2023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 주택	2020-001399	1	**059.9295**	59	59.9295	25.5746	85.5041	43.4958	128.9999	34.7733	728	69	72	145	21	51	358	370	34
		2	**072.6394**	72	72.6394	26.4068	99.0462	52.7204	151.7666	40.2806	202	20	20	40	6	14	100	102	12
		3	**084.9365A**	84A	84.9365	28.6958	113.6323	61.6454	175.2777	46.2126	129	12	12	25	3	9	61	68	9
		4	**084.8843B**	84B	84.8843	29.8229	114.7072	61.6076	176.3148	46.6498	81	9	8	16	2	5	40	41	4
합계											1,140	110	112	226	32	79	559	581	59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은 소수점 5째자리에서 단수조정 방식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하여 면적 합산, 확정 측량 등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면적은 견본주택과 인허가청에 비치한 사업시행계획인가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각종 면적과 대지지분은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발생한 경우 분양 당시의 분양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또는 세대별 각종 면적 및 대지지분의 5% 이내의 증감,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 내의 증감, 지적법상 축척 변경 등으로 인한 증감시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경계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전용 면적	약식 표기	총 세대수	동/호별	층 구분	공급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시
										2021-05-25	2021-09-27	2022-02-25	2022-07-25	2022-11-25	2023-03-27	
59.9295	59	728	101,107,110동1~2호 105,106,108동1~6호 109동5~6호 111,112동3~6호	1층	29	96,181	269,819	366,000	36,600	36,600	36,600	36,600	36,600	36,600	36,600	109,800
				2층	33	96,181	277,819	374,000	37,400	37,400	37,400	37,400	37,400	37,400	37,400	112,200
				3~5층	102	96,181	285,819	382,000	38,200	38,200	38,200	38,200	38,200	38,200	38,200	114,600
				6~10층	156	96,181	293,819	390,000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117,000
				11~20층	265	96,181	301,819	398,000	39,800	39,800	39,800	39,800	39,800	39,800	39,800	119,400
				21층 이상	143	96,181	310,819	407,000	40,700	40,700	40,700	40,700	40,700	40,700	40,700	122,100
72.6394	72	202	102,103,111,112동1~2호 109동1~4호	1층	9	111,413	323,587	435,000	43,500	43,500	43,500	43,500	43,500	43,500	43,500	130,500
				2층	11	111,413	333,587	445,000	44,500	44,500	44,500	44,500	44,500	44,500	44,500	133,500
				3~5층	36	111,413	342,587	454,000	45,400	45,400	45,400	45,400	45,400	45,400	45,400	136,200

				6~10층	54	111,413	352,587	464,000	46,400	46,400	46,400	46,400	46,400	46,400	139,200
				11~20층	67	111,413	362,587	474,000	47,400	47,400	47,400	47,400	47,400	47,400	142,200
				21층 이상	25	111,413	371,587	483,000	48,300	48,300	48,300	48,300	48,300	48,300	144,900
84.9365	84A	129	101,102,103동3호,5호 104동1~3호	1층	5	127,821	384,179	512,000	51,200	51,200	51,200	51,200	51,200	51,200	153,600
				2층	5	127,821	395,179	523,000	52,300	52,300	52,300	52,300	52,300	52,300	156,900
				3~5층	27	127,821	407,179	535,000	53,500	53,500	53,500	53,500	53,500	53,500	160,500
				6~10층	36	127,821	418,179	546,000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163,800
				11~20층	39	127,821	429,179	557,000	55,700	55,700	55,700	55,700	55,700	55,700	167,100
				21층 이상	17	127,821	441,179	569,000	56,900	56,900	56,900	56,900	56,900	56,900	170,700
84.8843	84B	81	101,102,103,104동 4호	1층	2	129,030	376,970	506,000	50,600	50,600	50,600	50,600	50,600	50,600	151,800
				2층	2	129,030	388,970	518,000	51,800	51,800	51,800	51,800	51,800	51,800	155,400
				3~5층	12	129,030	399,970	529,000	52,900	52,900	52,900	52,900	52,900	52,900	158,700
				6~10층	19	129,030	410,970	540,000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162,000
				11~20층	27	129,030	421,970	551,000	55,100	55,100	55,100	55,100	55,100	55,100	165,300
				21층 이상	19	129,030	433,970	563,000	56,300	56,300	56,300	56,300	56,300	56,300	168,900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자체 심의 결과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로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채권의 양도 등과 관련해 청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시행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관련 표준사업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청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대금채권(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합니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합니다. 청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시행자)은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59	72	84A	84B	합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9	4	2	2	27
	장기복무제대군인		11	4	2	2	1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1	2	2	1	16
	중소기업근로자		12	4	2	1	19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4	2	2	1	9
	장애인	인천광역시	6	2	1	1	10
		서울특별시	3	1	1		5
		경기도	3	1		1	5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50%)		36	10	6	4	56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36	10	6	4	5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109	30	19	12	170
		일반공급(25%)	36	10	6	4	5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1	6	3	2	32
생애최초 특별공급			51	14	9	5	79
합계			358	100	61	40	55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및 2020.09.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면적별 청약 예치금(특별공급, 일반공급 기준)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110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구분	내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대부팀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장애인 : (인천광역시)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서울시청 장애인자립과, (경기도)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 인천시청 재생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12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구분	내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269호(2018.05.08.)에 의거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인천광역시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합니다.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 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26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구분	내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및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 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관련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당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업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③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세무서 ③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 비치) ②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증명서류	① 견본주택 ② 해당 세무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1호(2020.9.29.), 일부개정]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32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세대수의 3% 이내)

구분	내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경과)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79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단 민간택지는 7% 범위)

구분	내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신청자격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3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0.2.20.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130% 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130%}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특별공급 당첨자 동·호수 결정방법	•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 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포함)는 당첨자발표 시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당첨일로부터 10일간(2021.01.21.(목) ~ 2021.01.30(토))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공개기간(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다음날 소멸됩니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및 인터넷 취약자인 경우에만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방문청약신청 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인터넷청약(청약Home 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청약신청 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5조,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 신청 내역에 대하여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주택전산망, 주민등록 전산망 및 한국부동산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결과 청약자격 착오입력 등에 따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청약 신청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시 청약자격 및 입주자선정기준 등은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청약제도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착오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부적격 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 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동·호수를 배정)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 및 예비입주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사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당첨일로부터 10일간(2021.01.21.(목) ~ 2021.01.30.(토)개별조회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30)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 충족 시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주택은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각호(3호, 5호, 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의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청약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신청 및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입주자저축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예금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③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신청 가능

④ 입주자저축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산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 시간 이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주택형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가점제 75%, 추첨제 2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0.12.30)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형에 신청이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 단, 1순위자로서 다음 중에 해당되는 분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 청약 신청 시 추첨제 100%로 청약 접수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분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구분	내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정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4.17.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합니다. •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청약가점제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재출)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본인 청약점수 = ① + ② + ③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 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다목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3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이며,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됩니다.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 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3. 부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업지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시 추첨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계약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IV. 신청일시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10일간)	계약체결(10일간)
일정	2021년 01월 11일(월)	2021년 01월 12일(화) 해당지역	2021년 01월 13일(수) 기타지역	2021년 01월 14일(목)	2021년 01월 21일(목)	2021년 01월 22일(금) ~ 2021년 01월 31일(일)	2021년 02월 01일(월) ~ 2021년 02월 10일(수)
방법 및 시간	인터넷 청약 (08:00~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인증서 로그인후 조회 가능)	등기우편 접수	견본주택 방문 계약 10:00 ~ 16:00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당사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상동 402번지 우. 14598	당사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상동 402번지 ※ 당첨자1인 외 입장 불가합니다.

※ 스마트폰 앱: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 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전 은행 청약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 안내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신청」⇒「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세대구성원 동의」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공급</td><td>본인 신청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영업점 영업시간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주택우선배정 신청

- 금회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1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기 바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함.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 중 (최하층)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을 포함)를 둔 자 ※ 경쟁 시 ①,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 양식)를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 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① 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② 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③ 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특별공급 구비서류(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인터넷청약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일반 (기관추천)	○		해당기관의 추천서	본인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세부내역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진단서(의료기관명과 임신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 각서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진단서(의료기관명과 임신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 각서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진 않는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된 신청자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 전원(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된 신청자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노부모 부양자	○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신청자(세대주)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신청자(세대주)와 만30세 이상의 직계비속(미혼인 경우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세부내역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table>
<tr><td rowspan="4">생애최초</td><td>○</td><td></td><td>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td><td></td><td>•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td></tr>
<tr><td>○</td><td></td><td>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td><td></td><td>• 소득세 납부사실을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table>
<tr><th>해당자격</th><th>제출서류</th><th>발급처</th></tr>
<tr><td rowspan="2">근로자</td><td>재직증명서</td><td>해당직장</td></tr>
<tr><td>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td><td>세무서</td></tr>
<tr><td rowspan="2">자영업자</td><td>사업자등록증 사본</td><td rowspan="2">세무서</td></tr>
<tr><td>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td></tr>
</table></td></tr>
<tr><td>○</td><td></td><td>소득입증
서류목록</td><td></td><td>• 공고일 이후 발생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소득입증 서류목록 상세내역
<table>
<tr><th colspan="2">해당자격</th><th>소득입증 제출서류</th><th>발급처</th></tr>
<tr><td rowspan="3">근로자</td><td rowspan="2">일반근로자</td><td>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td><td>세무서</td></tr>
<tr><td>재직증명서</td><td>해당직장</td></tr>
<tr><td>신규취업자</td><td>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td><td>해당직장</td></tr>
<tr><td rowspan="8">자영업자</td><td rowspan="2">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td><td>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td><td>세무서</td></tr>
<tr><td>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td><td>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td><td>세무서</td></tr>
<tr><td rowspan="2">신규사업자</td><td>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td><td>국민연금 관리공단</td></tr>
<tr><td>사업자등록증</td><td>세무서</td></tr>
<tr><td rowspan="2">법인사업자</td><td>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td><td>세무서</td></tr>
<tr><td>보험모집인</td><td>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td><td>세무서</td></tr>
<tr><td>방문판매원</td><td>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td><td>해당직장</td></tr>
<tr><td colspan="2">국민기초생활 수급자</td><td>수급자 증명서</td><td>동사무소</td></tr>
<tr><td colspan="2">비정규직 근로자</td><td>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td><td rowspan="2">해당직장</td></tr>
<tr><td colspan="2">일용직 근로자</td><td></td></tr>
<tr><td colspan="2">무직자</td><td>비사업자 확인 각서(별지서식2)</td><td>접수장소(견본주택)</td></tr>
</table></td></tr>
<tr><td rowspan="4">제3자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td><td>○</td><td></td><td>인감도장</td><td>청약자</td><td>•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td></tr>
<tr><td>○</td><td></td><td>위임장</td><td>청약자</td><td>•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td></tr>
<tr><td>○</td><td></td><td>주민등록증</td><td>대리인</td><td>•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td></tr>
<tr><td>○</td><td></td><td>인장</td><td>대리인</td><td></td></tr>
</table>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서류외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 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부적격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청약Home : www.applyhome.co.kr)되며, 입주자 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V.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1년 01월 21일(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년 02월 01일(월) ~ 2021년 02월 10일(수)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상동 402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전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 2021년 01월 21일(목) ~ 2021년 01월 30일(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을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 2021년 01월 21일(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제출기한	제출대상	등기우편 발송주소	유의사항
2021.01.22.(금) ~ 2021.01.31.(일) 10:00~16:00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경기도 부천시 상동 402번지 견본주택 (☎1811-6767)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당사 견본주택으로 등기우편 발송 하여야 합니다.

•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세대"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여,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당첨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계약금	961401-01-463591	청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 2명)
		중도금, 잔금	961401-01-463603	

※ 공급대금 납부에 대하여 별도로 가상계좌를 안내 또는 고지할 예정이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됩니다. 가상계좌는 세대별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2동 904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20904 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단,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인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융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 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금계좌 내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중도금대출(총 공급금액의 50%)을 알선 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는 자납조건임. 단, 대출협약 조건에 따라 '이자후불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입주 기간 내 대납이자 및 원금을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주가 거부되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조정대상지역은 중도금대출보증 요건 강화로 양 공사(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건수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		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계약금 입금 확인증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용)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 모두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서약서	• 서약서,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1순위 추첨제(1주택(처분요건) 당첨자 등 서약서 작성)
			○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	주민등록표초본	•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신혼 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생애최초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	소득입증 서류	• 공고일 이후 발생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일반공급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 시

		○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군복무기간 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1통
부적격 사항 소명확인 통보자		○	무주택 소명서류	• 무주택 소명서류('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계약자 신청 시 추가사항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방문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방문 진행절차 ① 사전방문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안내 → ④ 입주자방문 및 확인사항 작성 → ⑤ 방문표 제출 → ⑥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방문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입주예정일 : 2023년 11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 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음
- 관련법령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시행으로 일일 공사기간 단축 시 단축기간 만큼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공기연장이 될 수 있고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

■ 하자 담보책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시공사와 계약하지 않는 옵션품목은 시공사에서 하자담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VI.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1)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59	11,000,000	1,100,000	9,900,000	시스템용 PVC 조망형 이중창
72	13,000,000	1,300,000	11,700,000	
84A	14,000,000	1,400,000	12,600,000	
84B	15,000,000	1,500,000	13,500,000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금	KB국민은행	계약금(10%)	961401-01-463629	롯데건설(주)((주)포스코건설)
		잔금(90%)	961401-01-463632	

-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공사계약서에 준함.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공급대금 납부에 대하여 별도로 가상계좌를 안내 또는 고지할 예정이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됩니다. 가상계좌는 세대별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예시 : 101동 1005호 : '1011005홍길동' / 112동 506호 : '1120506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3)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 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일괄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찬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에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관련 법령 상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비확장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이 노출되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잇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수전류, 배관류, 배수트랩 등은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또는 상부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 및 비확장 세대에 인접한 세대는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후 미분양 아파트는 일괄 발코니 확장으로 시공 예정이며, 미분양 세대를 구입시 확장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 후 자재발주 등으로 취소는 불가하며, 전매시에도 이를 승계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추가선택 옵션품목(확장시 유상 선택 옵션)

(1) 가전, 가구 등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주택형	공급금액			비고
				계약금(10%)	잔금(90%)	총 금액	
전자제품	전동빨래건조대		전 타입	15,000	135,000	150,000	
	주방 하이브리드 쿡탑			50,000	450,000	500,000	
	빌트인 냉장고			550,000	4,950,000	5,5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국산가구)			150,000	1,350,000	1,500,000	- 특화 수납장 포함(국산가구)
인테리어 및 가구	유럽산 주방가구	(선택1)빌트인 김치냉장고 미포함	59	1,200,000	10,800,000	12,000,000	- 가구 제조사 : 놀테
			72	1,300,000	11,700,000	13,000,000	
			84A / 84B	1,400,000	12,600,000	14,000,000	
		(선택2)빌트인 김치냉장고 포함	59	1,500,000	13,500,000	15,000,000	- 특화 수납장 포함(놀테) - 가구 제조사 : 놀테 - 빌트인 김치냉장고 제조사 : 삼성전자
			72	1,600,000	14,400,000	16,000,000	
			84A / 84B	1,700,000	15,300,000	17,000,000	
	[키친플러스]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상판 및 벽		59	250,000	2,250,000	2,500,000	- 미드웨이 선반 포함
			72	300,000	2,700,000	3,000,000	
			84A / 84B	350,000	3,150,000	3,500,000	
	복도 수납장		59 / 72	40,000	360,000	400,000	
			84A	60,000	540,000	600,000	
	알파룸 펜트리	(선택1)싱글형	84B	300,000	2,700,000	3,000,000	
		(선택2)더블형					
	캐슬홈가든		84A	320,000	2,880,000	3,200,000	
	안방 대형 드레스룸		84B	450,000	4,050,000	4,500,000	

- 유럽산 주방가구 선택시에는 빌트인 김치냉장고(국산가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2) 추가 선택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 옵션품목	KB국민은행	계약금(10%)	961401-01-463629	롯데건설(주)((주)포스코건설)
		잔금(90%)	961401-01-463632	

-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공사계약서에 준함.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공급대금 납부에 대하여 별도로 가상계좌를 안내 또는 고지할 예정이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됩니다. 가상계좌는 세대별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예시 : 101동 1005호 : '1011005홍길동' / 112동 506호 : '1120506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추가 선택 옵션금 납부계좌와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
- 옵션품목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추가 선택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품목 및 계약일정, 납부방법, 선택타입, 계약추제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해제(또는 해지)가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제(또는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단, 계약 체결 가능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확장형평면 기준으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분양계약이후 사업시행자인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진행예정인 시스템 에어컨, 안방 붙박이장, 현관중문은 시공사와 직접계약 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하자 및 계약변경에 대해서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VII. 유의 사항

■ 일반사항

- 계약전 사업부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사업부지 외에 나머지 부지(도로, 공원, 녹지, 종교부지 등)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외부의 공개공지,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방음벽,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골프연습장 및 헬스시설이 설치되어 인접동 및 같은동 상/하부세대 등에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접세대 및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이후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시설물의 위치 및 설계도서 등의 표시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설계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인허가 내용대로 시공함.
- 대관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다음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조경공간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 경계선형 등
 - 세대 전면 발코니 난간의 높이, 형태, 재질 등은 같은 타입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블럭별, 동별, 층수 및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등은 실제 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명칭, 동표시, 건물외관 및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및 경계담장 등은 해당관청과 협의(자문)과정에 따라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장경사로)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입면 변화에 따라 상부세대와 인접세대의 단열재 시공이 상이하여 내부 마감재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단지의 조경, 옥상조경 및 식재계획 등은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후 지내력 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사용 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내의 (제연)휀룸, 동통신실, 전기/기계실 레이아웃 등은 인허가 협의 과정 또는 활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위치 및 개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조명기구, 단자함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특정 세대내에 가스정압기가 설치 될 수 있음.
-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 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본공사시 구조 및 성능 부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 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에 의해 인허가,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 면적은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의 범위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계약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중 불합리한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재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사업승인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권리

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 대지 지분 정리 등에 따라 건축물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에 이의없이 동의한다.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통보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경계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상호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등으로 처리 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59형, 84A형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고 미러형 타입이 있으므로 실제 계약하는 호수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고, 그 밖의 평형[72형, 84B형]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다로그, 배치도를 확인하여 미러형 타입 호수도 같이 참조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됨.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다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화장실 가구 등)와 접해져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최종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음.
- 본 아파트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 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실시공시 설계 변경 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소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지만 공동주택 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상가 등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바람.
- 견본주택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의거함.
- 당해 지역내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므로 타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되지 않는 1개소의 발코니만 수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발코니는 확장을 하지 않더라도 수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미확장세대는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벽두께, 천장 형태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상부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의 천장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깊이, 등박스의 크기 등의 천장부분이 변경(위치, 깊이, 형태 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 등에 의해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외부 샤시 설치로 인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손상이 있을 수 있음.
-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환기시스템은 세대환기를 위해 설치된 장비로 동절기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장비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환기시스템을 가동시켜 환기 해주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 되는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창호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시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등은 풍동실험결과 및 외부입면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있음.
- 세대내 및 공용부위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저층부 석재마감세대의 경우 외부창호는 다소축소 및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관계규정에 의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존한 후 "갑"이 임의로 철거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시공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문주의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의 경관조명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남측 지상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근린생활시설에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문주의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의 경관조명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기계설비시설의 환기시설물(D.A) 위치로 인해 저층 일부 세대에서 소음에 불리할 수 있음
- 103동 하부 일부 세대는 부대복리시설이 있어, 세대 내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옥상이 보일 수 있으며, 옥상조경 및 옥상 배수 등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세대 내 프라이버시,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의 발코니 확장 여부 선택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가 일부 돌출될 수 있음
- 세대내의 창호 크기, 개폐방향 및 설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에 의해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 대지경계선 안쪽으로는 전면공지 (보도, 자전거도로 등)가 설치되어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 관련 사항

- 견본주택 내 사용된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 커뮤니티모형 등)과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공급간지 등) 및 기타 홍보물(신문광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및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경관조명 설치 위치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위세대의 제공품목, 마감형태, 가구디자인, 유상옵션 상품구성 등으로 설치하였으나, 계약전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 현관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 및 유튜브 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과 별도 유상옵션이 포함된 영상이므로, 계약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및 유상옵션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이 인지하고, 계약조건 확인 후 계약체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없으시기 바람.
- 계약전 홈페이지 내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어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분양 홍보물은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공사시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가구, 전시가전, 인테리어 소품, 페브릭, 연출용 조명 및 소품 등은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
-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견본주택 내 부착되어 있는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분양홍보물은 가전 기기 등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이미지로 작성되었으며, 유상옵션 품목은 타입별, 형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품목의 차이가 있으니 공급간지 및 유상옵션 품목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을 미운영,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 각종 분양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공통사항

- 세대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각종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또는 수급불가, 품질확보 및 개선, 업체의 부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분양홍보물, 인쇄물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으로 함)
- 공장생산 자재(타일,벽지,시트,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석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이 달리 보일 수 있음.
- 세대 내부 마감자재 및 디자인은 세대 타입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59형, 72형에 동일 컨셉, 84A형, 84B형에 동일컨셉 적용되었음
-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및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시 접합 조인트가 발생되므로 이는 하자와 무관함.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시공될 수 있음
- 당 단지의 주동외관색채, 특화외장재의 종류 및 적용위치, 옥상구조물의 형태 및 마감재, 옥상 태양광집광판의 위치 및 각동, 주동 출입구의 형태 및 마감재, 단지 출입구 문주의 형태 및 마감재,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모양 등) 등 단지 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사업주체 결정에 따라 착공도서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계획(안) 대비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변경되어 시공될수 있음. 단, 인허가과정 상 협의의견 및 본공사 시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의 형태,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주동의 형태 및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하여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및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큰, 외부시설물 (난간디테일, 문주, 드라이에리어 DA),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주동의 동출입구, 저층부 3개층 높이(필로티 계획 주동의 경우 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임. 커뮤니티시설의 외부입면은 석재마감 및 석재뿜칠 혼합마감임. 단, 외관디자인 변경으로 인한 인허가 진행 시 석재 적용부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내 도로는 비상차로로서 일부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이 불편할 수 있음
- 각동의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내 차로 및 비상차로, 문주,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빛공해 저감을 위하여 일부 차폐형 식재,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나 세대별로 계획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해당 구조물이나 시설로 인하여 세대의 일조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인허가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외부용 E/V는 커뮤니티 선큰쪽에 1개소, 101동과 102동사이 1개소, 104동과 105동사이 1개소 총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커뮤니티 통행으로 인한 인접 동(102동, 103동, 104동, 109동, 110동, 111동)의 저층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104동과 105동 사이 108동과 109동 사이 공공보행통로는 외부인이 24시간 출입이 가능하기에 인접동 (104동, 105동, 108동, 109동)의 저층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그 외 101동과 102동사이 외부용 E/V이용후 단지내로 이동시 인접동(101동과 102동)의 저층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인명대피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됨.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인허가에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범위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르며, **조경공간의 개선을 위하여 수경시설이 추가될 수 있음. 특히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어 공용부전력으로 활용되어질 예정이며,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위치 및 각도는 향후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각동 필로티 내부 및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가 되어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위치와 형태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2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101동 북동측, 102동 북동측, 103동 북측, 104동 북동측, 105동 북측, 106동 북측, 107동 북측, 108동 북측, 109동 북측, 110동 북측, 111동 북측, 112동 북측에 계획되어 있음.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 작업에 더불어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와 크기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상이함.
- 단지내 조경시설물, 도로선형, 쓰레기분리수거장, DA 등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02동, 106동 및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정화조 배기덕트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 세대는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가스공급을 위한 별도의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협의에 따라 설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수 없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가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에 제한이 있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소방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선구간에는 잔디블록이 적용될 계획이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포장재가 변경될 수 있음
- 111동 남측, 108동 북측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를 위한 드랍오프존이 조성되어 있음. 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이 승하차를 위해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의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 계단실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환기를 위하여 일부층에는 개폐가 가능한 창호가 설치되고, 이 경우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2.3m 주차장 통로로서 일부 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음.(주차구역은 2.1m)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실외기는 지붕층 및 지상돌출구간, 계단하부, 별도구획공간과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의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됩니다. 추후 이로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협의결과에 따라 104동, 105동, 109동, 111동, 112동 옥상층의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104동/105동/109동/111동/112동 옥상층, 103동~104동 사이 휀룸, 106동~107동 사이 휀룸, 108동~109동 사이 휀룸, 111동~112동 사이 휀룸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는 일부동에 설치되어 있으며, 101동, 102동, 103동, 111동, 112동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의 필로티 내부계획 및 마감높이는 상이할 수 있음. 다만, 101동, 103동에는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 문주는 단지 서측 111동과 112동사이 및 107동과 108동사이의 단지주출입구에 게이트형 2개소가 계획되어 있음. 단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당 단지에 2개소의 단지 차량 출입구(111동과 112동 사이 및 107동과 108동사이의 차량출입구) 및 단지 남측의 근린생활시설 차량출입구 1개소가 있음. 다만, 인허가 및 공사과정에서 일부 위치 및 형태 및 개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내 5개소 및 기부채납부지인 어린이공원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하며, 보행자 출입구에는 별도의 출입 통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수 있음.
- 단지의 차량 주,부출입구 인근 주동(101동, 102동, 103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11동, 112동 등)의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침해,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7동과 108동 사이 및 111동과 112동 사이에는 대형 문주구조물이 설치 되며, 부출입구 주변은 부문주로 인하여 저층세대의 시야 및 채광 간섭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12동 1호 필로티 출입보도는 분양홍보물(단지모형)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추후 경미한 변경 인허가 처리 예정임.
- 101동, 108동, 111동, 112동 주출입구 앞 보도 포장패턴 일부는 분양홍보물(단지모형)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추후 경미한 변경 인허가 처리 예정임.
- 101동 주출입구 램프 위치는 분양홍보물(단지모형)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추후 경미한 변경 인허가 처리 예정임.
- 102동, 103동, 111동 필로티 출입게이트는 분양홍보물(단지모형)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공사 시 디자인 개선을 위해 위치, 형태, 구조, 높이, 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추후 경미한 변경 인허가 처리 예정임.
- 111동 6호 문주 옆 필로티 내부 계단은 분양홍보물(단지모형)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공사 시 입주자 동선, 편의 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추후 경미한 변경 인허가 처리 예정임.
- 101동, 102동, 111동, 112동 필로티 OPEN 부위는 분양홍보물(단지모형)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추후 경미한 변경 인허가 처리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 쓰레기보관함 위치는 분양홍보물(단지모형)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공사 시 미관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추후 경미한 변경 인허가 처리 예정임.

- 각 동 주출입구 상부에 줄눈이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후 경미한 변경 인허가 처리 예정임.
- 선큰 외부계단은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용 실외기실 추가로 계단형태를 변경하여 분양홍보물(단지모형)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공사 시 디자인 개선을 위해 위치, 형태, 구조, 높이, 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추후 경미한 변경 인허가 처리 예정임.
- 주민공동시설 옥상 계단실은 분양홍보물(단지모형)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공사 시 미관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추후 경미한 변경 인허가 처리 예정임.
- 주민공동시설내 여자화장실 세면대 및 골프장 세척대, 락카, 샤워실, 탈의실, 다목적실 남자화장실 레이아웃은 분양홍보물(커뮤니티모형)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공사시 미관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등이 일부 변경될수 있음. 추후 경미한 변경 인허가 처리 예정임
- 어린이집, 경로당 주방 창호는 분양홍보물(단지모형)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공사시 인테리어 가구 변경, 기능, 디자인 개선 등 위해 변경 될 수 있음. 추후 경미한 변경 인허가 처리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 장비반입구는 분양홍보물(단지모형)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공사시 디자인 개선을 위해 위치, 형태,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추후 경미한 변경 인허가 처리 예정임.
- 각동 주출입구 계단 핸드레일 난간은 분양홍보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공사시 디자인 개선을 위해 위치, 형태, 구조, 넓이, 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101동 남측에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 기존 상가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1동 북측으로 자전거보관소,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함, 어린이놀이터및 주민운동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서측으로 단지내 중앙 보행자 도로와 근린생할시설 차량 이동동선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동측 및 동남측으로 기존 존치 상가건물들, 북동측으로 마장로 30m도로에서 계단 및 E/V를 타고 올라오는 보행자 출입구가 있어 일부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조망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남측으로 어린이놀이터및 주민운동시설이 조성, 남동측으로 마장로 30m도로에서 계단 및 E/V를 타고 올라오는 보행자 출입구가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동측 및 동남측으로 기존 존치 상가건물들 및 종교용지가 있어 일부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102동 서측으로 차량출입구가 있으며, 어린이통학차량 승하차 대기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2동 북측 및 북동측에 주민공동시설 및 자전거보관소,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3동 남측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의 출입과 채광을 위한 선큰과 전용 외부엘리베이터 1개소, 옥외계단이 설치되어 인접한 1,2,3,4,5호라인의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3동 동측 및 남동측으로 기존 존치 상가건물들 및 북동측 종교용지가 있어 일부 세대의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3동 서측으로 세계로 장로교회가 존치가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3동 북측 및 북동측에 주민공동시설 및 자전거보관소,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3동 남측 지하1층과 지상1층 주민공동시설 및 남서측에 1층에 별동으로 어린이집 및 맘스카페가 설치되어 인근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4동 동측 및 남동측으로 기존 존치 상가건물들, 종교용지 및 북동측 마장로 30m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가 있어 일부 세대의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4동 서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남서측 세계로 장로교회가 존치가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4동 북측에 별도의 1층 경로당 설치 및 자전거보관소,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함,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4동 남측 지상1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인근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5동 동측 및 남동측으로 기존 존치 상가건물들 및 동남측 마장로 30m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가 있어 일부 세대의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5동 서측 및 서북측으로 차량주출입구 및 드랍오프존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5동 북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소,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5동 남측에 24시간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및 별도의 1층 경로당이 설치되어 인근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6동 동측 및 남동측, 북동측으로 기존 존치 상가건물들이 있어 일부 세대의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6동 서측 및 서남측으로 차량주출입구 및 드랍오프존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6동 북측에 기부채납 부지인 어린이 공원 및 자전거보관소,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6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인근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7동은 1호,2호라인은 59형 일반분양 아파트이며, 3호,4호,5호,6호라인은 39형 임대분양 아파트로 계획되어져 있음.
- 107동 동측 및 남동측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있어 일부 세대의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7동 서측에 기부채납 부지인 어린이집 및 청천2구역(이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서남측으로 차량 주출입구가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7동 북측에 기부채납 부지인 어린이 공원 및 자전거보관소,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7동 남측에 차량주출입구 및 드랍오프존, 차량 램프가 설치되어 인근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8동 동남측은 별도의 1층 경로당 및 24시간 외부인이 이용할 수있는 공공보행통로, 동북측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있어 일부 세대의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8동 서측에 청천2구역(이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8동 북측에 차량주출입구 및 차량 램프,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8동 남측에 24시간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및 주민운동시설이 계획되어있어 인근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9동 북측 및 동북측은 별도의 1층 경로당 및 24시간 외부인이 이용할 수있는 공공보행통로로 계획되어 있어 일부 세대의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9동 서측에 청천2구역(이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9동 북측에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함, 24시간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로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9동 남측에 세계로 장로교회가 존치되어 있고, 일부 옹벽 및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있어 인근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10동 동측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및 연회실) 등 부대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세대의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10동 서측에 청천2구역(이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및 세계로 장로 교회, 일부 옹벽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10동 북측에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함, 어린이놀이터로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10동 남측에 유아놀이터 및 별동의 1층 어린이집 및 맘스카페가 계획되어있어 인근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11동 동측은 주민공동시설, 동남측에 어린이 놀이터로 계획되어 있어 일부 세대의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11동 서측에 청천2구역(이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11동 북측에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함, 유아놀이터, 별동의 1층 어린이집 및 맘스카페로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11동 남측에 차량주출입구 및 차량램프, 음식물 이송설비 배출 스테이션, 드랍오프존이 계획되어있어 인근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12동 동북측은 어린이놀이터, 동남측은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세대의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12동 서측에 청천2구역(이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12동 북측에 음식물 이송설비 배출 스테이션,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함, 차량출입구, 차량램프, 드롭오프존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12동 남측 및 남동측에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기존 상가건물 및 남서측 부평두산위브더파크아파트가 계획되어있어 인근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배치 및 주동 형태상의 이유로 인하여 각 동의 전면이 예각으로 마주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일부 세대의 시야간섭 및 프라이버시, 일조 침해 등이 있을수 있음.
- 주거 공용부분인 전실 및 엘레베이터홀, 로비 등은 공용부분이므로 입주자가 임의로 전용공간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일부 동의 후면에는 소규모 휴게공간이 조성되며 동별 규모, 형태, 시설이 상이하며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장, 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쓰레기보관소는 공동주택용 12개소, 근린생활시설용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보관소가 101동 및 112동과 인접하여 설치되어 통행 시 경관저해,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함은 각 동별로 설치되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 및 수거장의 규모가 상이함.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해 질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111동, 112동 사이 지하주차장 램프 후면 부분에 음식물 이송설비 배출 스테이션이 설치되므로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위치, 디자인 등 변경될 수 있음.
- 102동 북동측, 105동 북측, 107동 북측, 112동 북측에 계획되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안에 음식물 이송설비관련 투입구가 추가로 설치됨. 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형태, 구조, 높이,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1층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휀룸 급기 DA가 지상층에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추후 실시공시 휀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추가 혹은 이동설치 될 수 있음. 각동인근 지상층에는 DA(제연DA포함),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생길 수 있음."
- 102동, 106동 및 근린생활시설 옥상으로 정화조 배기덕트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 세대는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수위 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 등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되며,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단지 내 소방용 지상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동 주변에는 해당 동용 연결식송수구가 철치 됨.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2층까지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는 단지내 총 2개소로, 단지 111동과 112동 사이, 107동과 108동 사이 인근 램프진입 2개소 계획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 지하2층으로 되어 있으며, 차량 통로 높이는 2.3m (주차구역은 2.1m) 택배차량 진입 불가함.
-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은 최신법 적용 전 심의 및 인가 받은 사업장으로 구법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주차구획 사이즈는 일반주차 폭 2.4M, 확장주차 폭 2.5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축소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단지 출입구를 통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며, 동별 주차거리가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출입구의 진입 및 진출차선의 형태 및 개수는 현장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 근처의 111동, 112동, 101동, 102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저층부 세대는 차량불빛,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동위치와 형태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거리가 상이하여 불편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 주동의 위치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관련공간 계획으로 인해 주동별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제습 및 냉난방을 위한 공용홀 에어컨용 실외기 배치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보행자의 동선간섭 및 팬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는 지상에 계획되어 있으며, 인근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110동과 111동사이 지하1층~지하2층에는 발전기실/전기실/펌프실/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고 101동과 102동 사이, 105동 지하1층~지하2층에는 빗물저류조, 정화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주동 (101동, 102동, 105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지하1층~지하2층) 휀룸에 주차장 환기를 위한 휀이 설치되어 차량 및 보행자에게 팬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될수 있으며, 인접주동 (101동, 106동, 107동, 110동)의 저층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지하2층) 각동 지하 및 휀룸실 내 집수정 배수 펌프가 설치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펌프 가동시 주차장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수 있음.
- 커뮤니티 오배수 펌프실은 103동 지하2층에 설치되며, 인접세대 및 주차장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지하1층~지하2층) 음식물 쓰레기 기계실로 인하여 인접주동 (102동)의 저층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연회실, 맘스카페, 주민휴게시설 등)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남측에 2개층규모 2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의 저층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는 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 배면에 설치되어 있고, 공동주택과 차량출입구는 별도로 근린생활시설 2개동 사이에 계획되어 있음.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은 지상1층 21대(장애인주차1대포함)로 계획되어 있음.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의 접근을 위한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 채광확보를 위한 선큰이 별도 설치됨.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소음,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중 커뮤니티센터가 102동 북측과 103동 남측 지하1층~지상1층에 설치됨. 지상1층에 관리사무소 및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스터디룸, 독서실, 방재실/MDF실 등이 계획되어있고, 지하1층에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 탁구장, 샤워탈의실 등이 계획되어 있음.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휴게시설(게스트룸)이 101동 하부 지상1층에 설치되고, 연회실(다목적실)이 103동 북측과 104동 남측 지상1층에 설치됨.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는 103동 하부 커뮤니티내에 지상1층에 계획되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집 및 맘스카페는 111동 북측 별동 지상1층, 경로당은 104동 북측과 105동 남측 지상1층에 별동으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에어컨 실외기는 별도구획공간, 지붕 또는 인근 외부 조경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공간에 설치되며, 이에따라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수 있고,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지하1층: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 탁구장, 샤워탈의실 등 및 지상1층: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스터디룸, 독서실, 관리사무소 등)이 103동 하부 지하1층, 지상1층에 설치되며, 커뮤니티센터의 접근을 위한 외부 엘리베이터와 채광확보를 위한 선큰 및 외부 계단이 별도 설치됨.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 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
-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 GX룸, 탁구장)의 운동장비(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어린이도서관의 가구류는 제공되며, 도서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단지로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게 계획되어 있음.
- 사용검사 신청 전 사업주체는 관할 관청과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제반사항(정원,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자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준공 후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 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 무인택배보관소는 각동 코어별 1개소씩 설치되며(코어내부 혹은 필로티내부)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코어 혹은 필로티 내부공간내에서 그 위치는 변경될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인근 지하주차장 램프출입구 측면에 경비실이 별동으로 설치됨. 단 경비실의 개수, 주차차단기의 위치 및 규모, 개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와 형태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당 현장의 구역내에는 소공원, 종교용지, 어린이집(107동 서측에 위치)이 계획되어 있고, 이 공원 및 종교용지, 어린이집은 기부채납 부지로 단지내 소유한 공원, 종교용지, 어린이집이 아니며, 실제 시공시 인접단지 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탈로그,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당 현장의 구역내에는 104동과 105동 사이, 108동과 109동 사이에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인 공공보행통로가 되어있음
- 입주 후 청천2구역 재개발(이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등 인접단지의 개발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인접단지의 개발 내용에 인접한 주동의 경우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일조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계약전 인접 단지의 개발계획 및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동측 마장로 30m도로의 경우 보행가능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 112동 및 근린생활시설 있는 구간은 20m도로, 그 외 구간은 30m도로가 있음. 이 도로의 경우 보행가능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측에 기부채납 부지인 어린이공원 및 일부 상가건물이 있고, 청중로 20m 도로가 있으며, 어린이공원의 세부 계획은 인허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며 그에 따른 소음도 증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이에 따라 106동, 107동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 상가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1동, 112동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110동 서측 및 111동 북측, 109동 남측에 세계로 장로교회가 존치하고 있어 109동, 110동, 111동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서측에 청천2구역(이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준공이 될 경우 청천2구역 인근 동인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동, 그 외 101~106동 일부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남서측에 부평 두산위브더파크 아파트가 2022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전체동 (101동~112동)중 일부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빛공해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동측, 남측, 북측에 단지와 상가 건물들이 인접하여 존치하게되어 일부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빛공해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동측에 102동 동측, 103동과 104동 사이에 종교용지 2개소가 단지와 인접하여 계획되어져 있어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일부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빛공해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당 현장 서측 청천2구역(이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와 인접하여 당단지 구역외 산청로 30m도로 일부가 계획되어 있고 청천2구역(이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측 일부 30m도로는 청천2구역 입주시 시공될 예정임.
- 단지 내 104동과 105동 사이, 108동과 109동 사이 공공보행통로가 있어 이 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어 사용되도록 계획되어져 있음.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대지경계 및 공공보행통로는 실제 시공시 인접단지 여건 또는 인허가, 디자인 개선에 따라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탈로그,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공

사시 변경될수 있음. 해당부분에 설치될 보도포장, 식재, 가로등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향후 단지내 시설물 유지관리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임"

- 당 현장 109동과 111동사이에, 110동 서측에 세계로 장로교회가 존치되어 세계로 장로교회와 단지 경계는 담장으로 경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 북측에 어린이공원 부지는 기부채납 부지로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그 외 단지 동측에 102동 동측, 103동과 104동 사이 동측의 종교용지 2개소가 있으며 이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함. 이 모든 단지 경계부에 어린이공원, 2개의 종교용지, 기존 존치된 세계로 장로교회 담장 등 실제 시공시 인접단지 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탈로그,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공사시 변경될수 있음.
- 단지 동측 대지 경계부의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미관 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면, 보행 및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외곽 경계 또는 옹벽 상부라인은 안전난간 또는 투시형 휀스가 설치될 예정이나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설치 불가할 수 있음,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 당 현장은 2009년 6월 정비구역지정고시, 2011년 1월 건축위원회 심의, 2011년 12월 최초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 아파트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 단위 세대별 유의사항

- 단위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 안방, 침실, 주방/식당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와 현관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인허가 도서상 단위세대의 타입은 분양세대(59형, 72형, 84A형, 84B형)로 구분되어 있음
- 같은 주동 내 세대간 층단차이 발생구간의 외부 노출세대는 단열재 적용에 의하여 상층부세대와 하층부세대의 사용면적이 상이할수 있음.(법적면적은 동일함).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 우물천장의 크기는 천정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각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음.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 방지를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의 비확장 부위 및 현관의 바닥레벨은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 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 온도조절기, 스프링쿨러, 환기디퓨저, 천정 몰딩 및 커텐박스, 걸레받이 등의 수량과 형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측 벽체에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수 있음.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00m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의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혹은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안방 앞 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발코니의 경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여도 비난방, 비단열(다용도실 제외) 공간이며,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음. 세대환기용 기계식환기장비가 실외기실 및 발코니 천정에 설치되며, 그로인해 일부 천정마감으로 인해 천장고가 상이할수 있음.
- 59형, 72형 84A형, 84B형 타입은 별도의 대피공간이 계획되어 있음.
- 102동 4호,5호라인, 111동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라인의 경우, 106동 5호, 6호 라인, 107동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라인의 경우, 주출입구에 설치된 문주에 의해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차량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및 가구 등이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음.
-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이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탈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세대 내부 마감재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아일랜드 식탁 포함)
- 비확장시 가구배치 및 마감이 확장세대와 상이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텐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 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시 마감재별 내공치수 및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
- 단지 외부에 설치되는 옹벽의 마감은 석재/ 석재뿜칠/ 페인트로 적용 부위별로 다르게 마감되어 있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이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탈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함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임대세대 및 조합세대의 경우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제공품목 및 마감재가 일반분양세대와 상이한 부분이 있음.
-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 거실아트월은 대형아트월타일(600*1200)로 시공됨.(임대세대는 제외)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시 아트월타일(400*800)이 시공되며 선택 유무에 따라 타일 디자인, 색상, 원산지, 타일나누기가 상이함. 대형아트월타일 시공에 따른 하지판넬의 두께 및 사양이 변경되어 적용될 수 있음.
- 확장 미선택 세대의 경우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 상판(MMA)이 시공되고 주방벽 악세사리가 확장시와 상이하게 적용되며 주택형별 주방상판 컬러 및 모델이 상이함.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아일랜드 식탁 포함)
-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시 동등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음.
-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하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 외산주방가구(유상옵션) 선택 시 도어마감 및 힌지, 레일, 악세서리류, 가구의 레이아웃, 시공 디테일, 사이즈 등은 국산가구와 상이하므로 반드시 견본주택 및 계약서를 참고하여 확인하여야 함.
-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음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 세대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현관 중문은 견본주택 연출용으로 시공사에서 판매하는 옵션 상품이 아니며, 추후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옵션 행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타입별로 제공되는 '복도장'의 형태 및 사이즈가 상이하므로 필히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을 참고하여 확인하여야 함.
- 외산가구의 경우 국내 제작 상품이 아니므로 추후 가구사의 내부 방침 및 제품 단종으로 인해 견본주택과 상이한 자재가 시공될 수 있음
- 84B 타입의 주방 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시스템은 주방 레이아웃의 특성에 따라 발코니에 설치되며, 해당부위에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설치를 위한 하부장이 시공됨. (상부장은 시공되지 않음)
- 현관 신발장, 복도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바람.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 천정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함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외부 입면개선 및 성능향상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추후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시 제공되는 이중 창호의 프레임은 외부창호 최외측면에 아사(ASA)가 적용될 예정임. (내부 프레임은 적용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내/외부 창호의 개폐방향 및 손잡이 디자인은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 설치 위치 및 크기는 외관 디자인에 따라 실시공시 카탈로그, 분양홍보물(모형, CG)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철재도어의 디자인, 힌지, 도어 프레임의 치수, 강판의 재질, 부속품의 형태 및 기능, 경첩의 개소 등은 추후 실 시공시 동등이상으로 변경/교체될 수 있음.
- 84B 타입 거실 측면에는 침실과 동일한 높이의 이중창이 설치되며 분할형 이중창 하부 높이가 안전상의 이유로 거실보다 높게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방충망 개폐방식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하며, 루버외부에 세대환기를 위한 환기캡이 시공됨
- 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거실,안방,침실,주방의 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이중창(유리난간 일체형창호)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함. 또한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함.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거실,안방,침실,주방의 발코니 외부 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단창(유리난간 일체형창호)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함. 또한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함. 또한 분합도어는 일반이중창이 설치되어 확장형 단위세대와 상이하오니 이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103동 303호, 304호, 305호의 경우 해당 커뮤니티시설 지붕층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활동에 의해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의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세탁기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내 시스템선반의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카탈로그,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음.
-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천정에 설치되는 유상옵션 전동빨래 건조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84B 타입의 주방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시스템은 주방 레이아웃의 특성에 따라 발코니에 설치 됨(하부장 포함).
-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세탁기 등을 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욕실 천장에는 욕실 환기용 배기팬 및 배관 점검용 점검구가 설치됨.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옵션 행사품목 중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냉매매립배관(거실,안방)이 시공되지 않음.
-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배관은 기본타입(거실, 안방) 으로 설치되며,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옵션 행사품목 중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한 세대는 제외임
-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옵션 행사품목 중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의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욕실 오배수배관은 층하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임
- 세대환기장비 및 배관이 실외기실 천장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다용도실에 설치시 천장이 설치되며,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 설치가 불가함.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발코니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 위치는 입주후 입주자의 식탁의 배치와 관계없이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입주 후 식탁등의 설치방향을 변경할 수 없음.
-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함.
-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함.
-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 주광색 등으로의 색온도 변경은 불가함
- 실외기실이 협소한 일부 59, 72타입 세대의 경우 세대 전열교환기가 주방 발코니 상부 천장에 설치 되며, 나머지 타입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에 장비 설치가 됨.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본공사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거나 후드의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싱크배수용 배관은 호수에 따라 좌,우 다르게 시공(하부장 타공위치 상이)될 수 있음.
- 보일러설치 시 보일러 가동에 따른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부부욕실 원피스 양변기 사용시 투피스 양변기에 비해 배수 수압이 약함.
- 3~10층 세대에는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됨.
- 일부 세대 현관에 제연설비 차압측정을 위한 차압측정공이 타공됨
- 세대 주방에 설치되는 음식물 쓰레기이송설비 장비가동시에 소음 및 진동이 세대에 전달될 수 있음
-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람.
-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 비확장 선택 시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음.
- 별도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 및 제품은 분양홍보물 및 옵션계약서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제품을 지정불가 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추후 옵션 계약시 해당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옵션 행사 품목(현관중문, 안방붙박이장,시스템에어컨 등)에 대해 시공사는 하자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조합세대에 제공되는 원목마루는 합판재질의 하지판과 원목상판이 접합되어 제작된 것으로 원목 상판의 경우 천연자재의 특성상 납품시기 및 제조공법에 따라 컬러 및 나뭇결 무늬가 일정치 않을 수 있으며, 타입별 적용 컬러가 상이합니다.
-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선택 가능 여부 및 상품구성, 설치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함
-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설치됨
-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선택시 수납 효율을 높여주는 특화 악세서리(빌트인 펜트리)가 같이 제공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됨.
-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옵션 행사품목 중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실외기실 인접 침실에서는 에어컨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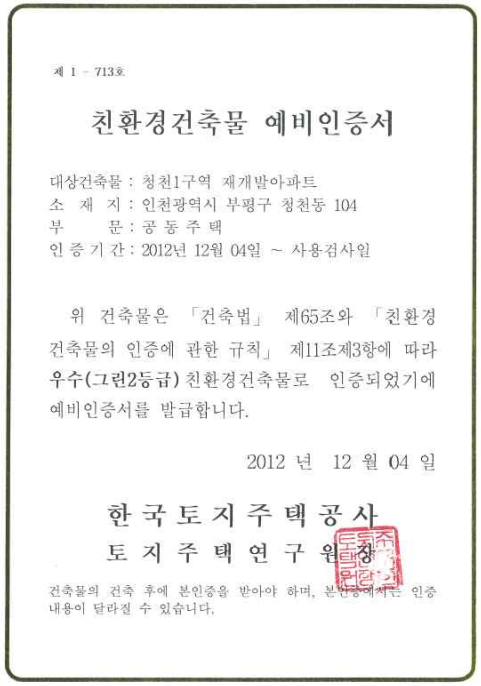
-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배치도(CG, 모형)의 단지내·외부 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됨.

VIII. 기타 사항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u>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u>**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제 1 - 713호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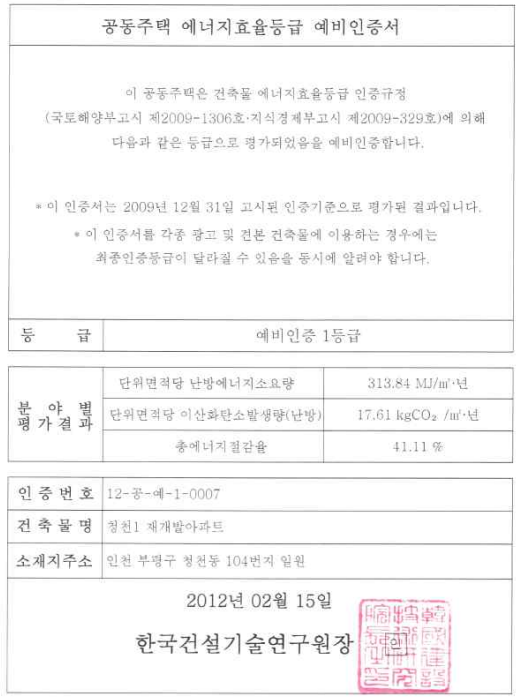
대상건축물 : 청천1구역 재개발아파트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04
부 문 : 공 동 주 택
인 증 기 간 : 2012년 12월 04일 ~ 사용검사일

위 건축물은 「건축법」 제65조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우수(그린2등급)**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2 년 12 월 04 일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토 지 주 택 연 구 원 장

건축물의 건축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본 인증서는 인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이 공동주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예비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는 2009년 12월 31일 고시된 인증기준으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견본 건축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종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동시에 알려야 합니다.

등 급	예비인증 1등급

분야별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	313.84 MJ/㎡·년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발생량(난방)	17.61 $kgCO_2$ /㎡·년
	총에너지절감율	41.11 %

인 증 번 호	12-공-예-1-0007
건 축 물 명	청천1 재개발아파트
소재지주소	인천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2012년 02월 1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 친환경주택 평가서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인 제품 사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가정용보일러, 변압기, 전동기(단, 0.7㎾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에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미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로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실별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미적용)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감리금액	감리회사명	비고
건축, 토목, 기계	4,241,311,800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소방, 통신	1,265,000,000	㈜하나안전기술단	
전기	859,007,000	㈜한동엔지니어링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0-101-0013300호	삼천사백육십칠억육천삼백이십만원정 (₩ 346,763,20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 샷시,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 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사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시행자	청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413(청천동 2층)	122-86-07781
시공자	롯데건설(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114-81-16377
	㈜포스코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506-81-02280

■ 견본주택 및 현장 위치





- **견본주택 : 경기도 부천시 상동 402번지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
- **운영시간 : 10:00 ~ 18:00**
- **현　　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 **인터넷 홈페이지 : www.lottecastle.co.kr**
- **분양문의 : 1811-6767**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